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우측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ls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 검색 QR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담당의사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
삶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 보고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www.lst.go.kr

“삶의 마무리에 대한 계획,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환자 및 환자가족의 결정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Sustaining Treatment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기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 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변경 및 철회는
언제든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서식 및
제도 전반을 관리하는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자와 환자가족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심의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우측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www.lt.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검색 QR

• 임종기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의 결정 및 이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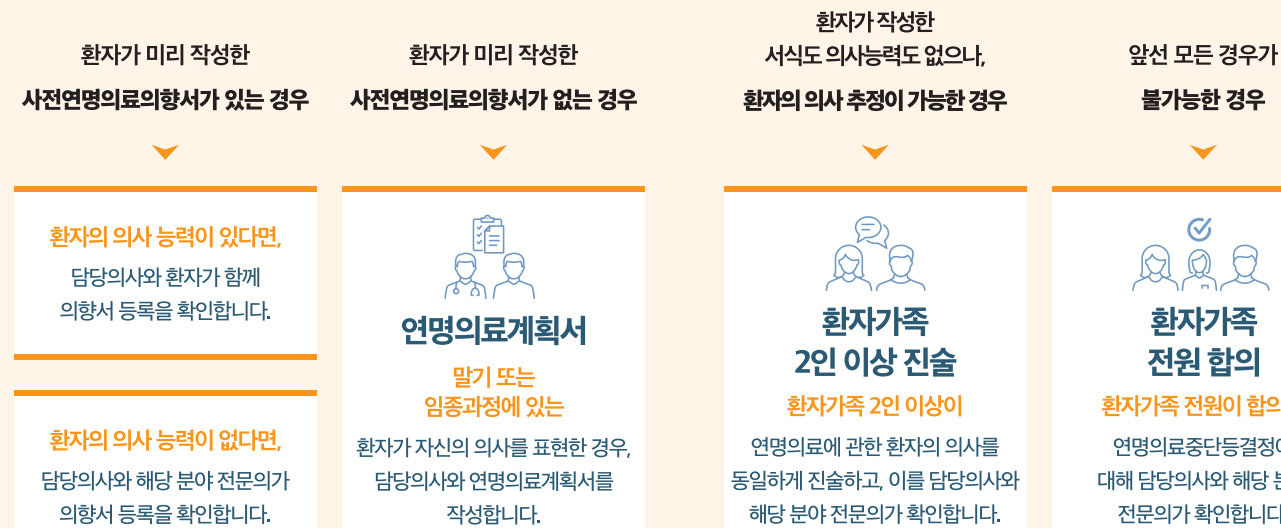
- ? 누가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
- ? 어디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 ? 무엇을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2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 ? 누가 담당 의사 또는 담당 의사 및 전문의 1인

- ? 무엇을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합니다.

• 연명의료중단 항목 •



심폐소생술

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
부작용 흉부 압박으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 기도삽관으로
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 발생 가능



혈액 투석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기술
부작용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 출혈, 감염 등 발생
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 가능



항암제 투여

암을 축소, 억제,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기술
부작용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 탈모증 등 발생 가능



인공호흡기
착용

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
부작용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 식도 천공,
폐렴 등 발생 가능



체외생명
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 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
부작용 출혈, 응고 장애, 도관 삽입으로 인한 허혈, 공기색전증,
혈전색전증 등 발생 가능



수혈

수혈은 정맥에 정맥관(IV)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
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
부작용 미열이나 피부발진 또는 체액 과부하 등 발생, 그 외 부적합
혈액 수혈, 알레르기, 급성 폐 손상,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



혈압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
부작용 지속적인 혈압 상승제 투여 시 사지괴저 등 합병증 유발 가능



기타

그 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